

농민 공익가치 직접 보상 근거 마련

김종희 의원, 제정방향 토론회 개최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 개편해야”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지급되는 직불제를 개편해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희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 활성화와 직접보상기본법(가칭) 제정방향 토론회’를 했다.

현행 직불금 제도는 10개 직접지불제가 3개 법률에 나누어 있고 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만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실제 직불금 중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친환경농업, 조경농업 및 경관보전 보조금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직불금의 3.5%에 불과하다.

직접지불제 사업(총 10개)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FTA협업지원 등이다.

직접지불제의 법적 근거(총 3개)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토론회에서는 직불제의 목적이 단순히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또한, 직불금이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률에 따라 다른 개념과 정의, 목적을 명시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념과 법률의 분산화로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농가소득안정, 공익적 다원적 기능 제고 등의 직불제 목적을 통합하고, 직불제의 정책적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한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이 심도 깊

게 논의됐다.

김종희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만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상은 제외되어 있다”며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10개 직불금을 통합하고, 공익적 기능을 정비하여,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 생산자가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경우 농정예산 중 직불금 예산 비중은 71.4%, 스위스는 농정예산의 75%,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예산에서 직불금이 33.6%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 강화 노력이 직불금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에게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업예산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농업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능력 기능 외에 공익적 역할 수행자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의원 등은 설 명절을 맞아 30일 전주서부시장을 찾아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경제 살리go!’

도의회, 전주서부시장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북도의회는 30일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송성환(전주7) 의장과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전주10), 김이재(전주4)·이병철(전주5)·김희수(전주6)·홍성일(비례대표)·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은 이날 전주서부시장에서 심성욱 상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입한 은누리상품권으로 쌀과 과일, 생선 등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한 뒤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송성환 의장은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해 가계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용·산업위기 지역 체계적 대책 법적 근거 필요”

김관영 의원, 특별법 발의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정된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해당 지역 경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중앙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3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서 「고용 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7면>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0일 김관영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국회서 ‘고용 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정부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9개 위기지역경제는 쉬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이다”면서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했고,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대량 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더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靑 “김경수 구속, 전혀 예상 못해”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4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뉴시스

김광수 의원, 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분류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0일,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함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 의료분류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2019년 1월 31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속으로